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정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56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23.

발 의 자 : 이정현 · 박홍배 · 강준현

김 현 · 손명수 · 이주희

최민희 · 허성무 · 김우영

한준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의정활동비,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도록 함.

시·군 및 자치구 지방의회의원들은 지방자치의 최말단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민의를 대변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, 현행법에 따른 의정활동비 등의 수급만으로는 가족의 부양 등 생계와 사회생활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시·군 및 자치구 지방의회의원들은 별도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하며 부족한 소득을 대체하고 있으나 이는 의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저해하고 이해충돌을 초래하기도 함. 또한, 다른 직업 등 소득원이 없는 청년들이 지방의회에 참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것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음.

이에 만 60세 미만의 자로서 의정활동비 외의 소득이 없는 시·군

및 자치구 지방의회의원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조례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40조제2항 신설 등).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중전의 제2항) 본문 중 “비용은”을 “비용과 제2항에 따른 소득보전 수당은”으로 한다.

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 외의 소득(「소득세법」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을 말한다)이 없는 만 60세 미만인 시·군 및 자치구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보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0조(의원의 의정활동비 등) ①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40조(의원의 의정활동비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 외의 소득(「소득세법」 제4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을 말한다)이 없는 만 60세 미만 인 시·군 및 자치구 지방의회 의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보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<u>비용</u>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 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 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.	③ ----- <u>비용</u> 과 제2항에 따른 소득보전 수 당은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③ (생 략)	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